

대법원 2015. 3. 26 선고 2014다8769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5. 3. 26 선고 2014다87694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4. 11. 21 선고 2014나27873 판결

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4. 7. 3 선고 2013가소48911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주식회사 성국

피고(선정당사자), 피상고인A

판결 선고2015. 3. 26.

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4나27873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김신

주심대법관민일영

대법관박보영

대법관권순일

별지